

기관이용안내서



Noblesse sanitarium
노블리스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을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노블레스 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집처럼 가족처럼 ” 이라는 노블레스 요양원의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께서 내집처럼 느끼시고 가족같은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상세히 기재, 관리한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췌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 및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

종사자 근무 체계

※ 직종별 종사자 배치 인력

총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계약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48	1	1	2	1	4	30
사무원	위생원	조리원	관리인	영양사	물리치료사	
1	1	4	1	1	1	

※ 주·야간 휴일 종사자 배치 인력

구분		행정팀	조리팀	물리치료팀	간호팀	요양팀	위생팀	관리팀
평일	주간	3	4	1	2	12	1	1
	야간	.			.	6		
휴일	주간	2			2	9		
	야간	.			.	6		

3

제공급여 종류 - 시설급여

4

비급여 내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종류	내용	금액	단위
식사 재료비	식사조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용	315,000 원	30일
간식 재료비	간식에 소요되는 재료비용	30,000 원	
상급 침실료	1인실	1,500,000 원	
	2인실	50,000 원	
이 미용료	이 미용사 출장비	실 비	

5

시설의 규모, 설비

기관명	노블레스 요양원			운영주체	김명자 외 1명(개인)					
설치일자	2019. 01. 10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69명			전화	033-242-3333					
팩스	033-243-3333			건물면적	396.06㎡		연면적	1584.24㎡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대상자 어르신									
기관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410 (산천리 749)									
홈페이지 주소	https://blog.naver.com/sccooim									
시설현황	침실	특별침실		사무실	간호사실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실
	36	3		1	1	1		1	6	2
	조리실	식당	대피소	목욕실	휴게실	세탁실	기계실	화장실	건조장	상담실
	1	1	3	3	2	1	1	43	1	1

가입 보험 현황

화재보험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가스포함)

[illegible]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및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illegible]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승강기 관련 사고 등의 배상책임

	동부화재의 새마을 DB보험 동부화재가 도입한 새로운 제품으로 동부화재는 1993년 설립된 이래로, 고객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I 계약기본사항								
보험종류		승관가시고해상책임보험	계약일자	2019년 08월 29일				
보험기간		2019년 08월 29일 ~ 2400년까지 노출대상요양원	2020년 08월 29일 ~ 2400년까지					
계 약 자	계약자	(사)노출대상요양원	승용번호	120191037666				
	주 소	(사)노출대상요양원 신축용 신축로 410 노출대상요양원(신축용)	반영번호	0				
지 보 화 자	피보험자	노출대상요양원	연락처	033-242-3333				
	주 소	(사)노출대상요양원 신축용 신축로 410 노출대상요양원(신축용)						
충분표		WON 49,500	납입방법	일시납				
II 소재지 사항								
소재지 번호		소재지 정보						
1		24203 강원 춘천시 신척읍 산천리 749번지 노출대상요양원						
III 목적용 사항								
소재지 번호	목적용번호	목적용명	목적용유형 구분	목적용유형 코드				
1	1	승관가	승관가차량(승용번호: 승관가발생장소) (산술가치구분/도/단위)	승객용 엘리베이터(30억 미만)(승·하하) 대수/기대				
IV 담보 사항								
소재지 번호	담보번호	담보사항	회계	1인당 보상한도액				
1	1	승관가시고해상책임(대인)	WON	80,000,000				
		승관가시고해상책임(대물)	무한	10,000,000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WON	5,000,000				
			1과당 보상한도액	연간보상총액				
			5,000,000	자기부담금				
				100,000				
				300,000				
				0				
V 계약공통특약약관								
순번	담보사항	순번	담보사항					
1	승관가시고해상책임보험 적용약관	2	대리운전 연역 특약약관					
3	정보기술 추가개발약관(사이버위협 무보험 특별약관)	4	제재위원 부보상 특별약관					
5	보안민원서비스 무보험 추가약관							
VI 분납사항								
회차	분납예정일	비용	회계	금액				
0	2019-08-29	100%	WON	49,500				
VII 보험료사항								
보험료구분		회계	금액					
적용보험료		WON	49,500					
초과보험료		WON	49,500					
환취환상보험료		WON	49,500					
VIII 기타사항								
보험료영합 담당자		동부보험영합팀	02-2210-5220					
		이세희 (담당전화: 0399316110058)	100-5259-0590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1588-0310					
홈페이지		www.idbins.com						
발행처 : 동부생명		발행일자 : 2019-08-29						
P-Q39R-373D-995A		1 / 2						

자동차보험

힐체어 리프트카 차량보험

[illegible]

2024년도 01월 프로그램 계획표

구분		인지 지적 능력별	인지 지적 능력별	여가	인지 지적 능력별	여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자		1	2	3	4	5	6
프로그램 (오전)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프로그램 (오후)		미술활동 (클레이아트)	음악활동 (노랫가락)	레크레이션활동A (윷놀이)	미술활동 (도장찍기)	레크레이션활동B (전통놀이)	발마사지
그룹		매화A	난초B	여가 A	국화	여가 B	통합
일자	7	8	9	10	11	12	13
프로그램 (오전)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프로그램 (오후)		미술활동 (용)	인지활동 (새해맞이)	레크레이션활동A (눈싸움)	음악활동 (말랑공촉감)	레크레이션활동B (복)	발마사지
그룹		매화	난초	여가 A	국화	여가 B	통합
일자	14	15	16	17	18	19	20
프로그램 (오전)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프로그램 (오후)		인지활동 (대한)	미술활동 (플레이콘)	레크레이션활동A (윷놀이)	인지활동 (실뿔기)	레크레이션활동B (권투)	발마사지
그룹		매화	난초	여가 A	국화	여가 B	통합
일자	21	22	23	24	25	26	27
프로그램 (오전)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프로그램 (오후)		인지활동 (대한)	음악활동 (겨울놀이)	레크레이션활동A (펜싱)	인지활동 (그림카드)	레크레이션활동B (검도)	발마사지
그룹		통합	매화 / 난초	여가 A	국화	여가 B	통합
일자	28	29	30	31			
프로그램 (오전)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신체기능 건강체조			
프로그램 (오후)		미술활동 (희망나무)	인지활동 (퍼즐)	레크레이션활동A (고리던지기)			
그룹		매화	난초	여가 A			

프로그램 일정은 영양원의 사정 및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룹		
매화 (K-MMSE 17~30)	난초 (K-MMSE 12~16)	국화 (K-MMSE 0~11)
여가A (ADL점수 0~10)		여가B (ADL점수 11~29)

신체 활동 지원	①옷 갈아입기 도움 ②세면도움 ③구강 청결 도움 ④신체 청결 도움 ⑤ 머리 감기 도움 ⑥몸 단장 ⑦식사도움 ⑧체위 변경 ⑨일어나 앉기 ⑩이 동 ⑪화장실 이용하기 ⑫시력 ⑬약 복용 ⑭관절움직임
인지 관리 정서 지원	①인지 기능 ②정서 지원
건강 관리	①투약관리지도 ②약 복용 및 인슐린 주사 ③관절구축예방간호 ④건강상태관찰 및 측정 ⑤건강 교육 및 상담 ⑥감염 간호 ⑦의사 진료 지원 ⑧치매 간호 ⑨의료기관 의뢰
간호 처치	①호흡기간호(흡인간호,기관 절개관 관리,산소요법관리) ②욕창간호(예방,피부,상처간호)③경관영양(비위관 교관 관리,영양간호) ④통증 간호 ⑤배설 관리(도뇨관, 방광, 회음부, 요루 간호) ⑥배설간호(관장,장루간호) ⑦투석 간호 ⑧당뇨 발 관리 ⑨구강 간호
기능 회복 훈련	①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②신체기능의 훈련 ③기본 동작 훈련 ④일상 생활 동작 훈련 ⑤인지기능 프로그램 ⑥여가, 정서프로그램 ⑦사회 적응 훈련 ⑧가족대상 프로그램 ⑨물리 치료 ⑩작업 치료
기타	①응급서비스 ②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③환경 관리 ④물품 관리 ⑤세탁물 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 예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 단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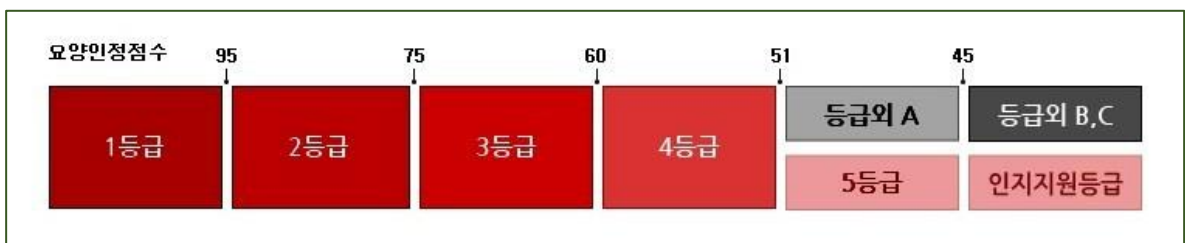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코로나 대응 현황

구분 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시설 운영	운 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주의 사항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의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절차

대한민국 아들·딸의 이름으로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돌보겠습니다.

01
신청
클릭

02
인정조사
클릭

03
등급판정
클릭

04
이용계획서
클릭

05
결과통지
클릭

06
서비스이용
클릭

우리는 자킴이!

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신체의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방임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10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6제3항).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10**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름,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난 관찰아

"포스터 부착 전 해당 부분을 점선에 따라 올려주세요"



노인학대의 약 80%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학대당하는 노인들은 자책감 때문에 학대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또는 110

당신의 신고로 어르신께 미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①

-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제2항4호).
- ▶ 노인학대 신고대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할지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3조제1항).
- ▶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반박에 신빙이 없을 때에는 아니한다(노인복지법 제33조제6항3호).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이란

만족스러운 노후는 어떤 것일까요?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여 사는 '나'와 '가'와 '나'의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필요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최대한 학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협약 내용 중

[기관의 노력]

1. 전 종사자 인권교육 (년4시간) 이수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법정의무교육)이수
3.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분기1회) 실시 (전 종사자 + 전 수급자)
4. 종사자 1일 1회 노인학대예방 서약서 낭독
5.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 (수급자+보호자)
6.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 운영위원회 참석